
**2026년 제주콘텐츠진흥원
일반감사 결과 보고서**

2026. 3.

I

일반감사 개요

□ 감사목적 및 추진근거

- 감사목적 : 진흥원 전반적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점검하여
진흥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
- 추진근거 :
 - 제주콘텐츠진흥원 정관 제36조(감사의 실시)
 - 제주콘텐츠진흥원 감사규정

□ 감사개요

- 기간 : 2026. 3. 5.(목) ~ 3. 6.(금)
- 장소 : (재)제주콘텐츠진흥원 본관 2층 회의실
- 대상 : 2025. 1. 1. ~ 12. 31. 진흥원 전부서 업무추진사항 전반
- 인원 : 진흥원 감사 2명(김양순 문화정책과장, 하만휘 공인회계사)
- 감사사항
 - 2025년 진흥원 운영 및 사업 집행사항 등 전반적인 업무
 - 진흥원 재산 운용사항에 대한 감사
 - 진흥원 회계집행 및 결산에 관한 감사
 - 진흥원 조직운영 및 그 업무에 대한 감사
 - 사업계획 집행상황에 대한 감사
 - 관련 법령 및 정관이 정한 업무에 대한 감사 및 결산감사
 - 그 밖에 진흥원 원장이 의뢰하는 업무에 대한 감사

II

일반감사 결과보고

□ 감사총평

【회계결산 분야】

- 진흥원의 2025년 12월 31일 현재 예적금 및 예치금의 잔액조회 절차 등 제반 감사결과 진흥원의 자산, 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
- '25년도 진흥원 총 수익은 12,661,839천원, 총 비용은 12,854,847천원으로 당기 193,008천원의 손실 발생, 진흥원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

【일반운영 분야】

- 제주콘텐츠진흥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감사 계획에 따라 진흥원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
- 감사결과
 - 진흥원 사업운영 관련(4건)
 - 수익계약 운영 관련 업무추진 개선(권고)
 - 지적재산권 관리 소홀
 - 미수채권 회수 방안 필요
 - 감사 관련 제도 개선(권고)

Ⅲ

감사 지적 세부사항 및 시정·개선 사항

회계결산 분야 : 지적사항 없음

일반운영(행정분야)

1. 수익계약 운영 관련 업무추진 개선(권고)

법령 등 근거
▶ 제주콘텐츠진흥원 재무회계 규정 제41조(계약의 원칙) 및 제42조(수익계약)
▶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익계약 운영요령 (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/ 2025.7.8. 시행)

현 실태

- 제주콘텐츠진흥원 재무회계 규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며, 계약의 목적·성질 등에 따라 수익계약으로 할 수 있음. 또한 진흥원에 가장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되는 방법으로 체결해야 함
 -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익계약 운영요령(행정안전부 예규)에 따르면 1인 견적에 의한 계약 시는 견적가격을 제출받아 제반여건(조사, 공표 가격 등) 등을 감안하여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,
 -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익계약 시는 공사 및 용역·물품의 경우 집행기준(행정안전부 예규)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있음.
 - 한편, 제주특별자치도와 출연기관 등 타 기관에서는 합리적인 예산 집행 및 사용을 위해 1인 견적에 의한 계약금액 결정 시에도 2인 이상 견적에 따른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있음
 - 제주콘텐츠진흥원의 경우 1인 견적서 제출대상 수익계약 체결 시 견적 대비 69%~100%로 계약별 일정한 기준 없이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있어 예산의 절감, 합리적인 예산 사용을 위한 방안이 필요함
- 또한, 같은 규정 제42조에 따르면 계약금액 1천만 원 이상 수익계약에 대해서는 월별 수익계약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
 - 본 감사기간 중 제주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수익계약 내역이 일부 누락 된 경우가 있어 확인(조치)이 필요함

□ 조치(개선)사항

- 수의계약 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계약금액 결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타 기관 사례를 참고하여 내부규정 정비를 권고
- 홈페이지에 정확한 수의계약 내역 공개로 공공기관 계약의 공정성 확보 필요

2. 지적재산권 관리 소홀

법령 등 근거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(공유재산의 범위) ▶ 제주콘텐츠진흥원 재산(물품) 관리 규정

□ 현 실태
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는 특허법, 실용신안법, 디자인 보호법, 상표법, 저작권법 등에 따른 특허권, 저작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 등을 재산의 범위로 정하고 있음
- 또한 진흥원의 재산(물품) 관리 규정에 따르면 진흥원의 모든 재산을 관계 대장에 등록하여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, 정기 재물조사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2월말까지 고정자산대장에 의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원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음
- 제주콘텐츠진흥원의 경우 물품, 비품 등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관리대장 미작성 등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

<지적재산권 현황: 제주신화마블 등 4건>

연번	저작물의 명칭	저작물의 종류	등록연월일
1	제주신화 마블	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>응용프로그램>오락	2020.09.29.
2	설문초등학교 수업일지	미술저작물>만화>그림	2020.10.12.
3	뮤지컬 신비로운 여신수업 대본	2차저작물>어문	2021.11.03.
4	2021 제주신화 콘텐츠(공연프리프로덕션) 개발 공연기획서 및 씬별 구성	어문저작물>기획안	2023.01.15.

조치(개선)사항

- 지적재산권에 대해 전수조사 후 관리대장 작성·관리 철저

3. 미수채권 회수 방안 필요

법령 등 근거
▶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장 채권 및 부채의 관리 ▶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 제9장 채권 및 채무의 관리 ▶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현 실태

- 제주콘텐츠진흥원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채권 징수 시 장기 미납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.
- 진흥원은 출자출연기관으로서 강제징수 권한은 없으나, 상위법령 및 회계 규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성실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 따라 미수채권 회수 처리 절차 등을 마련하여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함.
 - ※ 진흥원 사업운영에 따른 기술료 및 임대료 장기미납 발생
 -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(CRC)지원사업 기술료(24백만원)
 -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(B205) 임대료(3백만원)

조치(개선)사항

- 사업운영에 따른 미수채권 회수 강구 및 미수채권 처리 절차 매뉴얼 마련 등 관리 철저

4. 감사 관련 제도 개선(권고)

법령 등 근거
▶ 제주콘텐츠진흥원 정관 제7조, 제12조, 제36조 ▶ 제주콘텐츠진흥원 감사규정 제2조

현 실태

- 제주콘텐츠진흥원 정관 제7조제5항은 선임직(외부전문가)과 당연직(도 문화콘텐츠업무 담당과장) 감사를 각 1명씩 두도록 하면서,

- 제12조제4항에서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*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

* ① 진흥원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, ②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, ③ 제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 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,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해 필요한 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, ⑤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, ⑥ 이사회 의사록에 기명·날인하는 일

- 감사규정 제2조는 정관과 별도로 감사범위를 명시*하고, 제36조는 감사가 회계 등 진흥원 운영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함

* ① 진흥원 재산 운용사항, ② 진흥원 회계집행, ③ 진흥원 운영과 업무, ④ 사업계획 집행상황, ⑤ 관련 법령 및 정관이 정한 업무 및 결산검사, ⑥ 진흥원장이 의뢰하는 업무

○ 이에 따라 제주콘텐츠진흥원은 매년 당연직 감사(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 과장)에게 제주콘텐츠진흥원 사무 전반에 대한 일반감사 실시를 요청하고 있으나, 출자출연기관인 제주콘텐츠진흥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의 대상 기관임

□ 조치(개선)사항

- 제주콘텐츠진흥원의 감사규정은 기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이나 자체 감사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없고, 당연직 감사에게 사무 전반을 감사토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임
- 도 문화정책과에서는 제주콘텐츠진흥원 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·감독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,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감사 직무의 범위 등을 조정해 실질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자체감사에 따른 내부 감사반 구성·운영 등 정관 및 감사규정 정비가 필요함

2026년 제주콘텐츠진흥원 업무에 관한 일반감사 결과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.

2026년 3월 25일

(재)제주콘텐츠진흥원 운영 감사

회계 감사

김양순 (인)

하만희 (인)